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6조의4에 따라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근로사업 중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○ 자활기금사업신설(안 제3조 제6호~제8호)

- 제6호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
- 제7호 공익성이 높은 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활사업단 지원
- 제8호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원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제26조의4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[2015. 5. 28. ~ 6. 18.(21일간)]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
7. 공익성이 높은 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활사업단 지원
8.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원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업의 범위)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.	제3조(사업의 범위) ----------. (현행과 같음)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
<신 설>	7. 공익성이 높은 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활사업단 지원
<신 설>	8.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원 사항
6. (생 략)	9. (현행 제6호와 같음)